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제 정	2012.	7.
개 정	2014.	9.
개 정	2016.	3.
개 정	2020.	4.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및관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30조, 31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교수·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저하를 의미한다.
2. “교육·복지”라 함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3.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및 편의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3조(장애학생에 대한 배려) 대학생활 및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한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09.01)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학생의 개별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09.01)

1. 특수교육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장애학생 개별상담 및 지도 등 보호자 참여 배제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 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과정에서의 차별
5. 기타 장애를 이유로 한 그 밖의 거부, 배제 등의 차별

제5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09.01)

제 2장 조 직

제6조(장애학생지원부서) ①장애학생지원부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둔다.(개정 2020.04.13)

②장애학생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지원서비스 기준 작성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및 조정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학사, 진로, 생활 등의 상담에 관한 사항
4. 도우미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학습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학생 편의시설·설비의 제공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문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학생 지원개선 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③센터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상담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20.04.13)

제7조(구성) ①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04.13)

②센터장은 교원으로 보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04.13)

③센터에는 행정 및 상담업무 지원을 위하여 부센터장, 연구원 및 전담직원과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04.13)

제 3장 교수·학습지원

제8조(교수·학습지원) 장애학생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권고 안내문 발송 등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을 위한 학사, 진로, 생활 등의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기자재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을 위한 강의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등의 장애인식교육에 관한 사항
7. 장애학생 교육복지실태에 관한 사항
8. 기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사항

제9조(편의시설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내이동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설비 개선 및 지원
2. 장애학생의 교내이동을 위한 차량 운행
3.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파악 및 공개
4. barrier-free(무장애 환경) 공간 및 시설 확충(신설 2016.03.01)

제 4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10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①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의 기본방침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4.13)

②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행정부총장을 위원장, 학생생활종합지원본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학생복지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총무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0.04.13)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제10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삭제 2020.04.13.)

제11조(자문위원) ①센터의 사업기획 및 수행 등에 관한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교 또는 타기관의 장애인전문가(장애인 관련 교수, 특수교육 관련 교수, 장애인고용전문가, 장애인단체장 등)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0.04.13)

②자문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련부서 등의 협조) 센터는 심리상담, 진로지도 등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간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4.09.01)(개정 2020.04.1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